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성환·박홍배

박희승 • 서왕진 • 신정훈

유종군 • 윤호중 • 이학영

임광현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, 한파,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. 실례로 2023년 6월,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 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.

그런데,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'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'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.

이에,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,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함.

주요내용

가. 폭염, 한파,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(안 제5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 중 "위험이 있는"을 "위험 또는 폭염·한파·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① 근	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①
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	
박한 <u>위험이 있는</u> 경우에는 작	위험 또는 폭염·한파·
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	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
	<u>과 생명에 위협이 될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